

2024교총



교권 핵심 과제



좋은 교육 좋은 선생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목 차

1. 「학교안전법」 개정	4
학교 안전사고 발생 시 학생 보상 현실화 및 교원의 책임 감면	
2. 「아동복지법」 개정	5
모호하고 포괄적인 ‘아동복지법 제 17조 제5항 정서학대 조항’의 명확화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 내용 추가	
아동통합정보시스템 아동학대 행위자 등록 제도 개선	
3.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7
동료 교원을 신고하는 아동학대 범죄 신고 절차 개선	
4. 「교원지위법」 개정	8
무고한 아동학대 신고에 따른 무혐의 결정 시 교육활동 침해행위 인정	
5. 「교원지위법」 개정	9
교권보호위원회 결정에 대한 교원 이의제기 절차 마련	



6.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10
학교폭력의 범위를 ‘교육활동 중’으로 제한	
7. 단위학교에 설치된 성고충심의위원회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	11
8. 「(가칭) 위기 학생 대응지원법」 제정	12
위기 학생 진단·상담·치료 지원체제 강화	
9. 학부모 민원·요구에 의한 담임 교체 시 합당한 절차 마련	13
10. 교실 내 몰래 녹음 근절 방안 마련	14
11. 교원 순직 인정제도 절차 개선	15

과 제
01

「학교안전법」 개정

학교 안전사고 발생 시 학생 보상 현실화 및 교원의 책임 감면

- 학교 안전사고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 보상 범위 및 보상금액 현실화를 통해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의 안전한 학교 환경 마련
 - 사고로 인한 신체, 정신적 피해의 치료와 치유를 위한 보상 시 비급여 부분까지 보상 확대로 사고 이전의 완전한 회복을 지원
- 학교 안전사고 발생 시 학교안전공제회에서 보상하는 경우 교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는 민·형사책임 면제토록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 개정

(예)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시 교통사고 운전자에 대한 공소 제기를 면제하여 운전자 보호
- 2021년 학교안전사고 발생 시간대별 현황

(단위:건)

학교 급별	체육 수업	점심 시간	수업 시간	휴식/ 청소	학교 행사	특별 활동	등하교	석식/ 기숙	기타	계
유	958	704	4,479	584	188	0	529	2	1,736	9,180
초	11,238	5,088	4,991	3,807	527	667	2,808	1	1,027	30,154
중	16,514	5,350	2,533	3,855	1,050	2,206	1,098	38	761	33,405
고	8,429	3,134	1,898	1,853	988	1,150	878	807	473	19,610
특수	75	61	167	55	3	7	47	8	35	458
기타	104	53	41	47	10	27	25	25	8	340
계	37,318	14,390	14,109	10,201	2,766	4,057	5,385	881	4,040	93,147
	40.1%	15.4%	15.1%	11.0%	3.0%	4.4%	5.8%	0.9%	4.3%	

* 수업시간 : 체육시간 제외

〈정의당 이은주 의원실 제공자료〉

「아동복지법」 개정**① 모호하고 포괄적인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항 정서학대 조항’의 명확성을 법령에 규정**

- 학교 현장에서 가장 애매하고 어려운 것이 정서학대로 ‘무엇이 정서학대인지’가 법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매우 모호하기 때문임. 교원이 어떤 말 등 행위를 했을 때 정서학대인지에 대해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 학부모의 신고가 남발되고, 신고 후 교육청 조사, 조사·수사기관의 조사, 검찰 수사, 법원 판결로 이어지는 힘든 과정을 오롯이 교사 혼자 해결해야 하고 무혐의나 무죄가 나와도 신고자는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교사는 아무런 심신과 재산상 엄청난 피해를 보는 구조임.
- 또한 유사 사례임에도 조사·수사기관, 법원에 따라서, 또 누구냐에 따라서 천양지판의 판단과 결정이 되다 보니 학교 현장에서는 여전히 정서학대의 모호성으로 인한 불안감과 피해를 호소하고 있음. 따라서 교원의 교육활동 중 어떤 것이 아동학대에 해당하는지 법령에서 기준을 제시해야 하며, 적시되지 않는 것은 원칙적으로 아동학대가 아니라는 전제하에 관련 법 적용이 필요함.

②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 내용을 「아동복지법」에 포함

-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2023.9.27. 개정), 「아동학대처벌법」(2023.12.26. 개정)에 명시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 내용을 「아동복지법」에도 반영하여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와 교육활동 보호 입법 강화

※ 교원 99.4%,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를 적용하지 않도록 아동복지법 개정 요구(한국교총 설문조사 2023.10.25~27, 전국 유·초·중·고 교원 5,461명)

- 보건복지부 2022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아동학대 판단 건수 2만7,971건 중 유·초·중·고 교직원이 아동학대 행위자인 것은 1,702명(지자체 판단)으로 확인됨. 그러나 같은 해 아동학대 관련해 교원의 징계 건수는 118건에 불과함. 이는 아동학대에 대해 지자체와 수사기관의 판단이 달라 혼란을 주는 한편, 지자체의 아동학대 판단 기준이 사법기관의 조치에 비해 과하다는 사실의 방증임. 이에 아동복지법에도 정당한 교육활동은 아동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확히 규정해 지자체 판단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도록 제도 개선 필요

③ 아동통합정보시스템 아동학대 행위자 등록 제도 개선

- 현재 아동복지법 제28조의2에 의거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학대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피해 아동, 그 가족 및 아동학대 행위자에 관한 정보와 아동학대 예방 사업에 관한 정보를 아동정보시스템에 입력·관리하고 있는데 실제 학대를 하지 않은 무죄, 공소기각, 불처분 등도 관련 정보가 계속 등록돼 남아 있는 문제점이 있음
- 아동통합정보시스템 아동학대 행위자 등록 현황에 따르면 2017년 이후 무죄, 공소기각, 불처분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았음에도 시스템에 아동학대 행위자로 등록된 비율이 매년 약 25%에 이름(2021년 기준 시스템 전체 등록자 2,962명 중 유죄 이외 판결은 772명으로 약 26%에 달함)
- 시스템에 등록되면 아동 관련 기관이 시스템을 통해 아동학대 판단 전력을 조회할 수 있지만, 시스템 등록 시 당사자에게는 해당 사실을 알리지 않아 대부분은 자신이 학대 행위자로 등록돼 있는지도 모르는 실정임
- 무혐의와 무죄 등의 처분을 통해 범죄가 아닌 것으로 결정된 지자체의 아동학대 사례 판단 이력을 즉시 삭제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필요



- 교원은 신고 의무 대상자로 지정돼 있어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이를 어길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돼 있음.
- 현재 학교는 학부모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임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 의심하거나 민원을 제기하면서 신고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음. 학교장 등 교원은 해당 사안의 실체나 진위를 파악하지 못한 채 신고를 강요당하는 현실임.
- 학부모의 강한 의심과 요구로 어쩔 수 없이 동료 교사를 신고해 해당 교사가 억울함과 배신감과 억울함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발생하며, 또 학부모의 강요로 신고를 하였다가 해당 교사가 무혐의, 무죄가 되는 경우가 많아 학교 내 불신과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음.
- 교내 명백한 아동학대 사안의 경우 당연히 신고해야겠지만 교원의 신고 의무 대상자 지정 이유는 가정과 사회의 아동학대 인지 및 신고 근본 취지는 퇴색되고 학부모의 의심이나 민원에 의해 확인도 안 되는 현실에서 동료 교사 신고 강제화는 매우 문제가 있음.
- 교육부의 2023년 아동학대 매뉴얼 181쪽에는 “학교 종사자는 아동학대 의심 시 신고를 해야 할 의무가 발생함. 학부모의 민원만으로 신고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민원의 내용을 포함하여 여러 정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아동학대로 의심이 될 때는 신고해야 함”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유명무실함.
- 따라서 현재 아동학대처벌법상의 의심만으로 신고 의무 조항은 법률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신고의 판단 기준은 신고인의 합리적 의심과 신고인이 아동학대 범죄를 인지하였는지에 기반하여야 함.
- 학부모가 아동학대를 의심하여 민원을 제기할 때는 학교는 학부모에게 지자체나 수사기관에 직접 신고하도록 안내하도록 하고, 학교는 관할 교육청에 보고하는 것으로 대체해야 함.
- 학부모에 의한 아동학대 신고시 학교와 해당 교사는 △교원지원청 조사 △경찰·아동학대전담공무원 조사 △검찰 수사 △재판 등 3중·4중의 조사와 수사를 이미 받고 있음.

과 제 04 무고한 아동학대 신고에 따른 무혐의 결정 시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간주하는 「교원지위법」 개정

- 아동학대는 다른 범죄와는 달리 ‘의심’이 된다는 이유만으로 신고 및 수사가 진행돼 신고를 당한 교원이 입는 피해는 상당함. 학생과의 분리 조치 등으로 휴가나 휴직, 직위해제까지 이뤄지는 경우 교사의 심신의 고충은 물론 다수 학생의 학습권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음. 2023년 정당한 학생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고 법률이 개정됐으나 여전히 ‘정당한’ 범위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이 없음.
- 아동학대 신고자에 대해서는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의2에 따라 불이익 조치가 금지돼 있음. 일부 학부모의 경우 이를 악용해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해 무분별하게 아동학대로 신고함. 이로 인해 교원들의 교육활동이 크게 위축되는 반면, 무분별한 신고를 일삼는 학부모는 어떠한 책임을 지거나 불이익을 받지 않음.
 - 교원 77% “자신의 교육활동 또는 생활지도가 아동학대로 신고당할 수 있다는 불안감을 느낀다.” (2022. 12. 27.~2023. 1. 6. 교원 5,520명 설문조사)
- 따라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해 교원이 무혐의나 무죄로 결정되고, 학부모가 악의적인 의도로 신고를 했거나 신고를 남발할 때는 이를 업무방해죄나 무고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법률 마련 필요함



- 현행 교원지위법 제25조(교육활동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 등)에는 “교육장이 한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명시된 반면, 피해 교원의 교권보호위원회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 조항은 명시되어 있지 않음.
- 교육부 교권보호위원회 이관 자료(2024. 2월)에는 조치에 대한 구체 절차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에 대한 안내가 되어 있는데 학생, 학부모는 물론 교원도 해당되는지 불분명하고, 교권보호위원회 결정 중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아님 조치 △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판단하여 심의·의결한 학생에 대한 조치에 관하여 피해 교원이 더 가중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이의제기 절차 모두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 가능한지 불명확함.
- 반면, 학교폭력예방법은 피해 학생이 피해 학생 보호 조치뿐만 아니라 가해 학생의 조치에 대해서도 이의가 있으면 행정심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교원지위법에서는 가해 학생만 조치에 이의가 있는 경우 재심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학교폭력예방법을 준용해 가해 학생뿐만 아니라 피해 교원에 대해서도 이의제기 절차를 명확히 마련하도록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교육부의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2022.1.)

- Q** 교원이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한 사항에 수긍하지 못하는 경우, 불복하여 재심 신청을 할 수 있나요?
- A**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아님’으로 판단하여 교원이 수긍하지 못하는 경우, 국·공립학교의 교원은 행정심판을, 사립학교 교원은 민사소송을 청구하여 이의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판단하여 심의·의결한 학생에 대한 조치에 관하여 피해 교원이 더 가중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이의제기 절차는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과 제 06

학교폭력의 범위를 '교육활동 중'으로 제한하는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 현행 학교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발생한 행위를 규정하고 있어 방과 후 학원에서 발생한 일, 가족 간 여행에서 발생한 일 등 교원의 생활지도가 미칠 수 없는 영역에서 발생한 사건까지 모두 학교에서 처리
 - 최근에는 방과후 SNS 등을 통해 이뤄지는 학교폭력 사안이 증가하고 있어 조사나 처리에 한계 노정. 2024년 3월부터 학교폭력전담조사관제가 도입 예정이나 여전히 문제는 지속 될것으로 예상
 - 초등학생들이 아파트 놀이터에서 놀다가 발생한 다툼, 방학 중에 지방 친척 집에 갔다가 발생한 현지 아이와의 다툼, 서로 만난 적도 없는 학생에게 SNS로 욕설을 한 것, 학원에서 다른 학교 학생과의 다툼, 사설 기관이 주최하여 외국에서 열리는 각종 어학연수, 각종 캠프에서 발생한 다툼도 학교폭력에 해당
 - 아동학대, 가정폭력 등 성인에 의한 폭력 또한 학교폭력으로 처리하여야 함.

2023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전수 조사) 피해 경험

피해 장소 (%) (복수응답, 건수기준)	구분	학교 안 (68.8)							학교 밖 (27.3)						기타
		교실안	복도, 계단	운동장, 강당 등	화장실	특별실 방과후 교실 등	급식실, 매점 등	기숙사	공원, 놀이터 등	사이버 공간	학원, 학원 주변	집, 집근처	학교밖 체험활동 장소	PC 노래방 등	
전체		29.0	17.7	10.4	4.4	3.7	3.2	0.4	9.0	6.3	5.0	4.2	2.0	0.8	3.9
초		27.9	16.7	11.1	4.2	3.3	2.8	0.2	11.6	4.8	6.0	4.8	1.9	0.6	4.1
중		31.3	20.9	9.2	4.8	4.3	3.6	0.4	3.6	9.3	3.0	2.8	1.9	1.5	3.3
고		31.3	17.8	8.4	4.9	6.0	5.0	1.9	2.4	10.5	1.7	2.7	2.4	1.4	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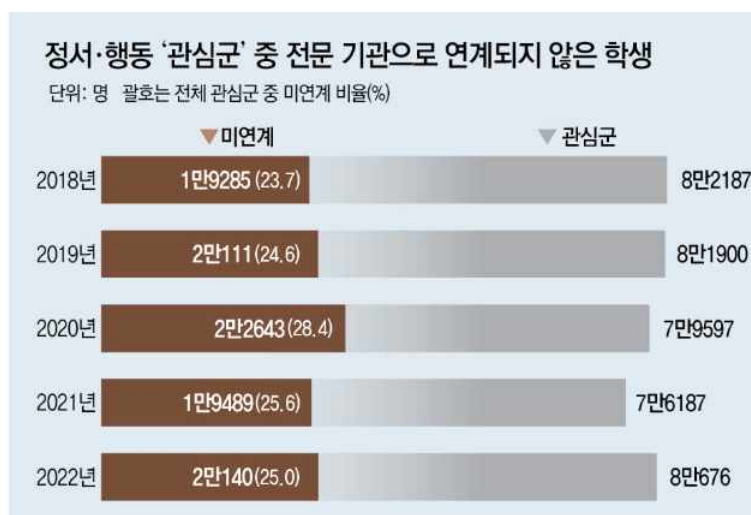
출처 : 교육부 보도자료, 2023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2023.12.14.)

- 학교폭력의 정의를 학교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안으로 범위를 한정하도록 법률 개정

- 현재 여성가족부의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표준안」에 따라 성희롱, 성폭력 사안의 심의를 위해 기관별로 성고충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에 따라 대다수 지역에서 단위학교에 성고충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음. 해당 위원회에서는 교원 간, 교원-학생 간 성 관련 사안에 대해 조사 및 심의하고 있음.
- 민감한 성 사안에 대한 가·피해자 조사에 있어 전문적인 지식과 식견이 필요함에도 이를 갖추지 못한 학교 교직원이 심의에 참여하게 되면서 객관적인 조사나 심의에 어려움이 있고 교직원 간 갈등이나 분열로 이어지기도 함. 특히 교사와 학생 간의 사안에 대해서는 학부모가 심의 결과에 대해 신뢰성 문제를 제기하거나 또 다른 민원의 소지가 되는 경우도 있음. 이러한 사안은 학교의 교육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기도 함.
- 이에 따라 인천, 대전, 충남 등 일부 시·도교육청은 학교 성고충심의위원회를 시·도교육청으로 이미 이관했고, 충북은 2024년 3월부터 이관하는 등 학교 현장의 호응을 얻고 있음.
- 따라서 전국적으로 학교 성고충심의위원회를 교육청으로 이관, 운영해 성 사안에 대한 전문적·객관적인 심의를 통해 신뢰성을 높이고, 학교는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함. 함. 다만 「양성평등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기관별로 성 고충 상담원을 두도록 하고 있고 피해자보호, 재발 방지 등의 의무를 두고 있어서 학교에서는 최소한 성 고충 상담원을 통한 피해자 상담이 필요할 수 있음.



- 교육부에 따르면 2022년 초·중·고 내 정서·행동 ‘관심군’으로 분류된 8만676명 중 2만140명 (25%)이 전문기관과 연계되지 않았다고 함.
- 현재 학교 교실에는 적대적 반항장애,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우울, 자폐 등 정서·행동 위기 학생이 있어 교사들이 수업과 생활지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특히 과잉, 돌발, 폭력적 행동의 반복으로 전문적 진단과 치료가 필요한 학생들이 교사에게만 떠맡겨져 교권 침해는 물론 여타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가 빈발하고 있음.
- 정서·행동 위기 학생에게 조기에 적절한 지원을 하지 못하면 일차적으로 위기 학생의 치료와 회복을 방치하는 것이므로 별도의 진단,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위기 학생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학부모가 의무적으로 전문기관에서 진단(검사)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상담·치료할 수 있도록 지원함.
- 현재는 학교와 교사가 전문기관 연결을 설득해도 학부모가 ‘우리 아이가 그럴 리 없다’, ‘교사가 알아서 해야지’ 등 거절하면 달리 방법이 없는 현실임. 정서·행동 문제를 회피하거나 인정하지 않고 치료를 거부, 방치하는 것은 학생의 교육 회복 기회를 빼앗는 일이자 아동학대(방임)라는 인식을 가져야 함.
-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칭 ‘위기 학생 대응지원법’을 만들어 법적 시행 근거를 마련해야 하며, 또한 교육지원청 등이 학교의 위기 학생 진단 의뢰를 모아 일괄 시행하는 방안도 필요함.



(동아일보 2024. 1. 30. 보도)

학부모 민원·요구에 의한 담임 교체 시 합당한 절차 마련

- 현재 학부모가 학생 교육활동 및 생활지도 과정에서 담임교사의 행위를 문제로 삼아 학교장에게 담임 교체를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음.
-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 7월까지 학부모 요구로 교체된 초·중·고 담임교사는 129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교체에 이르지 않았지만 요구된 총건수는 파악이 되지 않지만, 실제 학교 현장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음.
- 자신의 초등학생 자녀에게 청소를 시켰다는 등의 이유로 지속해서 담임교사 교체를 요구한 행위는 교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대법원 판결(2023. 9. 14.)이 있음.
- 갑작스러운 담임 교체는 해당 교사의 교육 의지를 상실시키고 교권을 추락시킴과 동시에 수많은 학생이 한순간에 담임교사가 바뀌어야 하는 문제가 있음.
- 현재 담임 교체에 대한 명확한 절차가 없어서 (1) 담임이 동의를 하여 변경하는 경우 (2) 아동학대로 신고되어 피해 학생 보호를 위해 변경하는 경우 (3) 학교장이 직권으로 담임 교체 등으로 임의로 담임이 교체되고 있음. 따라서 일방적인 학부모의 요구나 민원에 의해서 결정되어서는 안 되며, 해당 교사의 억울함이 없도록 방어권과 교권을 보호함과 동시에 학부모의 주장을 공정히 들어보는 담임 교체 절차 마련이 필요함.
- 이를 위해 「교육공무원 인사관리 규정」에 의해 단위학교별로 설치되어 있는 교원인사 자문위원회에 반드시 자문을 거쳐 그 결정을 존중해 학교장이 결정하는 등의 절차 마련이 요구됨.

교실 내 몰래 녹음 근절 방안 마련

- 현행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1항에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과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면서 동법 제4조에서는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내용은 재판 또는 징계 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명시돼 있음.
- 또한, 대법원은 교실 내 학부모의 몰래 녹음은 아동학대 증거로 채택할 수 없으며, 교실은 공개되지 않는 장소라는 판결(2024.1.11.)을 내린 바 있음. 그런데도 수원지방법원은 유명 웹툰 작가가 자녀의 외투에 몰래 녹음한 내용을 아동학대 증거 자료로 채택하여 유죄(벌금 200만원 선고유예) 판결(2024.2.1.)을 내렸음.
- 관련 통신비밀보호법과 대법원판결도 무의미하게 만들고 조사·수사기관과 재판에 따라 제각각인 현실에서 학생, 교원의 음성권, 초상권, 자유권, 교권과 학습권은 보장받기 어려움.
- 따라서 전국의 교원들은 교실 내 몰래 녹음 근절을 위한 제도적 방안 마련을 간절히 요구하고 있음.

몰래녹음 불인정 및 특수교사 무죄 촉구 탄원 서명 전개한다

몰래 녹음 불인정 및 특수교사 무죄 촉구 전국 교원 탄원 서명운동 전개한다!

교총, 5일부터 서명운동 돌입...2심 앞두고 1인 시위, 집회 등도 불사
몰래 녹음 면죄부 준 끝...앞으로 어떤 교사가 열정 갖고 학생 지도하겠나
교권5법 의미 퇴색, 대법 판결과 생활지도고시 및 교육활동 침해 고시 무력화
"2심에서는 반드시 몰래 녹음 인정 말고 특수교사 무죄 선고해야"

1. 주호민 작가가 자녀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 특수교사에 대해 수원지방법원이 1일 몰래 녹음을 증거로 채택해 유죄를 선고했다.

한국교총 한국교원총연합회

알림톡 도착

['몰래 녹음 불인정 및 특수교사 2심 무죄 판결' 전국교원 탄원]

선생님!

2월 1일, 수원지방법원은 유명 웹툰 작가가 자녀 외투에 녹음기를 넣어 몰래 녹음하고 특수교사 일부 발언을 문제 삼아 아동학대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유죄(벌금 200만원 선고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교총은 2심 재판을 앞두고 5일부터 전국 교원 탄원 서명운동에 돌입합니다. 교실내 몰래녹음을 근절하고 특수교사 2심 무죄 판결을 위한 탄원에 적극 동참과 동료 선생님께도 공유 부탁드립니다.

□ 탄원 서명:
<https://forms.gle/yyyChh8eZc7oWM MX7>

교원 순직 인정제도 절차 개선

● 현행 순직 인정제도 절차의 문제점

- ① 악성 민원, 학생 문제행동 다양한 이유로 안타까운 교사의 사망이 이어지고 있음. 공무원재해보상법에 따라 ‘담당 공무수행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재해’와 “공무와 관련한 사유로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한 상태에서 한 행위”로서 다음의 경우는 공무상 재해로 인정한다. [공무원재해보상법 제4조, 시행령 제5조]“라고 되어 있으나 실제 이러한 법령이 제대로 적용되지 못하는 사례가 많음.
- ② 유족의 순직 입증 책임에 따른 어려움 :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슬픔에 잠겨 있다 정보접근성에 한계를 가진 유족이 고인의 사망이 공무상 사망임을 입증하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음. 순직 인정제도 자체가 까다로워 비전문가인 유족이 전문가인 인사혁신처나 보상심의회 심의위원회를 설득하기 쉽지 않음.
- ③ 여타 공무원보다 자살 교원의 순직 인정 비율이 매우 낮음.
 - 교원은 다른 공무원과 비교해서 순직 인정 비율이 전반적으로 낮은 편
 - 특히, 자살 교원의 경우, 다른 공무원보다 순직 인정 비율이 매우 낮은 편

2020년~2023년 상반기 교원, 일반직 공무원, 소방공무원, 경찰공무원
공무상 사망(순직) 신청 및 승인 자료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1~6월		
		청구	승인	인정 비율	청구	승인	인정 비율	청구	승인	인정 비율	청구	승인	인정 비율
교원	자살	3	1	33%	4	1	25%	8	1	13%	2	0	0%
	전체	16	5	31%	14	2	14%	16	5	31%	11	3	27%
일반직	자살	5	2	40%	3	1	33%	11	3	27%	7	1	14%
공무원	전체	43	20	47%	51	30	59%	66	39	59%	16	3	19%
소방	자살	6	3	50%	3	1	33%	7	6	86%	3	3	100%
	전체	19	15	79%	13	9	69%	26	23	88%	10	9	90%
경찰	자살	2	1	50%	3	2	67%	4	3	75%	1	0	0%
	전체	32	18	56%	23	16	70%	28	21	75%	9	7	78%
합계		126	65	52%	114	62	54%	166	101	61%	59	26	44%

- 인사혁신처의 ‘교육공무원 자살 관련 재해보상 심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교육공무원의 자살을 공무원 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은 이유로 ‘가족 문제’나 ‘가정불화’ 등이 주로 등장. 2018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자살 교육공무원에 대해 재해보상이 신청된 건수는 총 20건이나 이 중 업무상 인과관계가 인정돼 재해보상 인정받은 사례는 3건(15.0%)에 불과

「출처: 교사 극단 선택 줄 잇는데…5년간 순직 인정은 20건 중 3건뿐, 왜?

- 경향신문(23.09.21), 김송이, 강은 기자」

● 현행 순직 인정제도 절차 개선안

- ① 공무원재해보상법에 따른 교원순직 인정제도 확대
- ② 시·도교육청 및 시·군·구 교육청 차원의 지원시스템 구축 : 전담 부서 및 전담 인력 마련
- ③ 보상심의회에 유·초·중등 교원참여 보장
- ④ 순직보상심의 절차 간소화 및 신속화



2024교총



좋은 교육 좋은 선생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